

1. 개정이유

코로나19 환자 수 증가로 감염병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 병동 증축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시설 기준이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음압병실에 대해 병동 단위의 기준 신설(안 제31조별표4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2 제1호가목 중 “음압병상”을 “음압병실”로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병동형으로 설치할 경우 1인실은 10㎡ 이상의 면적, 다인실은 병상당 6.3㎡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. 이때 병상 간격은 1.5m 이상, 벽에서 0.6m 이상 이격 할 것

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중환자실의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의 2] <개정 2020. 9. 11.> <u>음압병실 설치·운영 기준(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</u> 1. 설치기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. 음압병상: 15㎡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. 전실: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. 화장실: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라. 음압용 공급·배출 시설: 다른 공급·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, HEPA 필터(HEPA filter)를 설치할 것 마. 음압용 역류방지시설: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.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: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. 운영기준 가.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,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-2.5 pa(-0.255 mmAq) 이상 유지할 것 나.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.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비 고 음압병실의 설치·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의 2] <개정 2020. 9. 11.> <u>음압병실 설치·운영 기준(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</u> 1. 설치기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. 음압병실: 15㎡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. <u>다만, 병동형으로 설치할 경우 1인실은 10㎡ 이상의 면적, 다인실은 병상당 6.3㎡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. 이때 병상 간격은 1.5m 이상, 벽에서 0.6m 이상 이격 할 것</u> 나. 전실: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. 화장실: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. <u>다만, 중환자실의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</u> 라. 음압용 공급·배출 시설: 다른 공급·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, HEPA 필터(HEPA filter)를 설치할 것 마. 음압용 역류방지시설: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.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: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. 운영기준 가.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,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-2.5 pa(-0.255 mmAq) 이상 유지할 것 나.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.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비 고 음압병실의 설치·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